

2016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6. 8. 19. (금요일), 14:00~15: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출석위원 : 박영규, 김명자, 김상보, 김영운, 김용덕,
김지민, 김해숙, 서연호, 박상미, 양종승,
연제영(미 등), 이형환, 임장혁, 장정룡
(이상 14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 (공 개) |
|---|-------------------|-------|

【검토사항】

- | | | |
|---|---------------------------|-------|
| 1 | ‘용호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공 개) |
|---|---------------------------|-------|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6-001

1.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 제안사항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보호 대상 종목 지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6년도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마련 및 긴급보호 대상 종목 지정을 위한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목적 : 종목 자체의 단절 등 긴급한 위기에 빠진 종목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종목의 자생력 강화
- 법적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3조, 시행령 제 15조

◎ **법 제 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①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문화재의 기록

◎ **동법 시행령 제 15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경우
2.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경우
3.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

2) 추진경과

-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기본계획 수립('16.3월)
-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용역 실시('16.4~6월)
- 취약종목 전승자·지자체 대상 전승현황 등 관련 설문조사 실시('16.6월)
- 취약종목(38개 종목) 대상 사전 평가 실시('16.6월)
 - 현장평가 대상 3개 종목 선정(가사, 발탈, 줄타기)
- 3개 종목 대상 현장 평가 실시('16.7월)

3) 긴급보호 대상 종목 지정 개요

- 사전 평가
 - 평가 대상 : 38개 취약종목(예능종목 5, 공예종목 33개 종목)
 - 평가 방법 :
 - 심사위원별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 평균값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우선순위 및 평가위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평가 결과
 - 지원의 효과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예능 분야 중심 검토
 - 인적전승기반이 취약한 가사, 발탈, 줄타기 종목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가 바람직
- 현장 평가
 - 평가 종목 : 가사, 발탈, 줄타기
 - 평가 방법 : 지속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 중점 평가
 - 심사위원별로 종목 전승현장(전수관 등)을 방문하여, 전승 환경 및 여건 등 조사
 -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전승의지 및 능력, 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실시
-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 지정 고시('16.8월)
 - 지정 종목별 전문컨설팅단 구성, 종목별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16.12월)
 - 긴급보호대상 종목별 맞춤형 지원 실시('17~)

라. 검토의견

- 최근 종목 간 양극화 현상 심화 등에 따라, 종목 자체의 소멸 등 시급한 위기에 빠진 종목을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올해부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보육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또한 정책의 효과성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종목의 취약성과 함께 종목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향후 활성화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 추진하고자 함.
- 사전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 첫째 올해는 예능 종목을 우선 선정하여 행정적 노하우를 축적한 후 차후에 공예종목을 선정하고, 둘째 그 중에서도 취약성의 가장 큰 기준인 인적전승기반이 취약한 가사·발탈·줄타기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음.
- 사전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가사’, ‘발탈’, ‘줄타기’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함.
- 무형법 시행령 제15조2항에 의거, 지정예고 절차를 생략함.

바. 특기사항

- 없음.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6-002

1. ‘용호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용호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6년도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에 따라 ‘용호놀이’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경상남도에서 ‘용호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서 제출(‘15.11.6)
- 2016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지자체 추천종목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15.12.4)
- 2016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6.1월)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학술조사 실시(‘16.4월~6월/학술조사기관)

3) 학술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용호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
- 용역결과 주요내용
 - 현행 용호놀이는 1960년대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과 이후 지역 아리랑제 시연 과정에서 복원된 공연 행사로서, 기존의 마을 대동놀이의 전승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금번 종목 지정가치 조사 결과, 조사자 전원이 용호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그 근거로 현행 용호놀이가 기존에 행해졌던 마을 큰줄다리기의 전승 단절 이후 30분 분량 공연물로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점과 이에 따라 대동놀이로서의 기능과 특징이 상당 부분 상실됨. 그리고 역사적 준거가 미약한 지금의 상황

에서 용호놀이의 연행 시기, 장소, 대상, 형식, 방식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용호놀이는 지방 무형문화재로서 전승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라. 검토의견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미흡함. ‘용호놀이’를 시도무형문화재로 존치함.

바. 특기사항

- 없음.